

제 정 : 2021.01.04.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2021.01.04.

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48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9 조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4 조 (구성 및 위원장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2 장 회 의

제 5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8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9 조 (통지의무)
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

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1 조 (간사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